



호주 환급세액의 연금재원 활용과 함의

강성호 연구위원, 류건식 선임연구위원

호주는 '세액환급금'과 '매칭보조금'을 연금재원으로 활용하여 노후자산 축적을 제고하는 연금가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. 세액환급금은 부과된 세액의 일부(보험료의 15%)를 환급하는 세제혜택 제도이며, 매칭보조금은 보험료 납부 시 매칭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, 세제 및 보조금 정책을 병행하고 있음. 우리나라도 현행 세액공제액을 계좌환급하여 노후자산을 축적하고,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입유인을 제고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■ 우리나라는 2014년 세액공제 전환 후 연금저축의 가입유인이 약화되고, 특히 저소득층의 연금가입이 급격히 줄어들어 연금세제 개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

- 우리나라 연금저축 가입률은 소득공제 시점인 2013년에 14.7%였으나, 세액공제가 적용된 2014년에 14.1%로 감소한 후 2018년 12.3%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¹⁾
 - 특히, 총 급여 2천만 원 이하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2013년 1.17%에서 2018년 0.2%로 감소하여 세액공제 도입이 저소득층에 유리²⁾할 것이라는 기대를 벗어남

■ 이에 따라 연금가입을 활성화하고,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제고하기 위해 연금세제 정책을 활용하는 호주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

- 호주는 세액환급금(보조금 포함)을 연금재원³⁾으로 활용하여 노후자산을 제고하는 연금세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
- 호주의 연금세제는 노후지원금(세액환급금과 매칭보조금)이 연금재원으로 환급되어 본인의 연금계좌에

1) 국세청, 국세통계연보 2014~2019년도를 활용하여 산출함

2) 총 급여 5천 5백만 원 이하 소득자는 세액공제율 16.5%를 적용받아 소득공제제도보다 세제혜택이 높아 가입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음(정원석·마지혜(2017), 「연금저축 감소 원인과 시사점」 등)

3) 본고의 연금은 호주의 퇴직연금인 Superannuation Guarantee pension을 의미함

적립되어 노후자산이 누수되지 않는 연금세제 정책을 운영함⁴⁾

- 세액환급금(the Low Income Super Tax Offset: LISTO)은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⁵⁾의 일정 비율만큼의 금액을 본인의 연금계좌에 환급해 주는 형태임
- 매칭보조금(Super Co-Contribution: SCC)은 연금계좌에 본인부담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이에 매칭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, 지원된 보조금은 본인의 연금계좌에 적립되는 형태임

■ 첫째, 호주는 연 \$37,000⁶⁾ 미만의 저소득자에게 납부보험료의 일정액을 연금계좌에 환급해 주는 세액환급금 제도(LISTO)를 2017년부터 운영함⁷⁾

- 세액환급금 제도를 적용받는 가입자는 기여금(사용자 기여금 포함)의 15%에 해당하는 금액(세액공제 방식)을 호주 국세청(ATO)으로부터 본인의 연금계좌로 환급받음⁸⁾
 - 예를 들어, 근로자(가입자)의 소득⁹⁾이 연 \$36,000일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2019년 기준 의무기여율인 9.5%에 해당하는 금액인 \$3,420를 보험료로 납입해야 함
 - 납입된 보험료(\$3,420)에 15%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세액환급금(\$513)은 가입자의 연금계좌로 자동 환급됨(최저 \$10, 최고 \$500)
- 세액환급금 제도는 납입단계에서 과세액을 일정 부분 돌려받으나¹⁰⁾ 급부시점에서 연금소득은 비과세된다는 점에서 완전한 세제혜택(Tax Incentives)을 제공하는 형태임
 -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연금세제 혜택인 세액공제제도는 과세가 이연됨에 따라 세제혜택이 발생하는 구조임
 - 우리나라의 세액공제가 세제혜택으로 이해되는 이유는, 일반적으로 납부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급부시점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세보다 많아 차액만큼 세제혜택이 발생하기 때문임
- 호주의 경제활동인구¹¹⁾ 대비 LISTO 수급자 비율은 25%(2017년 기준)로 우리나라의 연금세제혜택을 받는 가입자 비율 12.6%¹²⁾와 비교하면 높은 편임

4) 우리나라의 연금세제 지원은 본인의 연금계좌에 환급되지 않고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액이 노후자산에서 누수되므로 호주의 계좌환급제도와 차이가 있음

5) 호주의 연금소득세 체계는 TTE(납부 및 운용 시 과세, 급부 시 비과세) 형태여서 납부보험료에 과세되는 형태임

6) 이하 달러(\$)는 호주달러(AU\$)를 의미하며, 호주 환율은 1AU\$ = 772원이고(2020년 4월 16일자 기준), 동 환율 적용 시 AU\$37,000은 2,856만 원임

7) <https://www.ato.gov.au/Individuals/Super/In-detail/Growing-your-super/Low-income-super-tax-offset/>

8) 연금계좌 총납부액은 보험료와 환급액이 됨

(<https://www.ato.gov.au/Individuals/Super/In-detail/Growing-your-super/Low-income-super-contribution/?page=2>)

9) 세액환급금 제도에 적용되는 소득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 소득(세전 소득) 기준이며, 호주의 소득세율은 19%(\$18,201~\$37,000), 32.5%(\$37,001~\$90,000), 37.0%(\$90,001~\$180,000), 45.0%(\$180,001 이상)의 누진세율이 적용됨

(https://www.ato.gov.au/rates/individual-income-tax-rates/?=top_10_rates)

10) 과세액은 소득세율 19~45%에서 누진적으로 결정되고, 세액환급액은 15% 정률로 적용됨

11) 호주의 2017년 기준 경제활동인구수는 1,298만 명임(http://kosis.kr/statHtml/statHtml.do?orgId=101&tblId=DT_2KAA301_OECD)

12) 수혜율(가입률)은 과세대상근로소득자 중에서 납부액이 있는 자의 비율임. 2018년 기준 수혜율(가입률)은 12.3%임(국세청, 국세통계연보 2018, 2019년도 자료를 참고)

- 호주 퇴직연금기금 협회(ASFA: Association Superannuation Funds of Australia)에 따르면 2017년 기준 325만 명이 LISTO를 받았으며, LISTO 평균 환급금은 약 370달러임
- 한편, 10년 동안 평균 LISTO 환급금을 받는 30대가 67세까지 적립할 경우 추가되는 적립금은 현재 가치로 약 9,000달러로 추정됨¹³⁾
- 최근 2018/2019년 세액환급금 현황을 살펴보면, 연간 기준으로 LISTO 수급자는 211만 명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, 총 수급액은 6억 4,714만 달러임

〈표 1〉 2018/19년 분기 및 연간 세액환급금 운영 현황

(단위: 명, 호주 달러)

구분		LISTO 수급자	LISTO 총액
2018	3분기	156,393	35,831,000
	4분기	1,949,010	534,156,000
2019	1분기	137,692	36,051,000
	2분기	157,373	41,098,000
계		2,106,383	647,136,000

자료: ATO(<https://www.ato.gov.au/About-ATO/Research-and-statistics/In-detail/Super-statistics/Low-Income-Super-annuation-Tax-Offset/Quarterly-reports---Low-Income-Superannuation-Tax-Offset/>)

■ 둘째, 호주는 자발적인 퇴직연금 적립금 제고를 위해 본인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이에 매칭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칭보조금(Super Co-contribution) 제도를 2003년부터 운영함

- 매칭보조금 제도는 소득 \$53,564¹⁴⁾ 미만에 속하는 71세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되며, 본인부담 대비 보조금 비율은 10~50%(연간 최대 \$500) 수준임¹⁵⁾
 - 예를 들어, \$38,564 이하 근로자가 \$1,000을 기여하면 \$500의 매칭보조금이 계좌에 납입되며(최대 보조율 50%), 소득이 증가할수록 보조금은 감액됨
 - 이때 적용되는 소득은 세액환급금 제도에 적용되는 세전 소득과 달리 세후 소득이며, 해당 기여금은 비적격 퇴직연금 기여금으로 명명됨¹⁶⁾
- 매칭보조금은 자신의 납부세액에서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납부세액의 존재와 무관하게 추가 납부 시 보조금을 받게 되는 비세제성 혜택(Non-tax Incentives)이라는 특징이 있음

13) <https://www.abc.net.au/news/2019-12-27/low-income-women-and-super-savings-retirement-pay-gap/11781156>

14) 소득은 2019~2020년에 적용되는 기준임

15) Australian Taxation Office(<https://www.ato.gov.au/>)

16) 강성호·류건식·김동겸(2017), 「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」, 보험연구원

〈표 2〉 호주의 매칭보조금 지원 현황 (2019~2020년)

(단위: 호주 달러)

소득 \ 본인부담	\$1,000	\$800	\$500	\$200
\$38,564 이하	500 (50.0%)	400 (50.0%)	250 (50.0%)	100 (50.0%)
\$41,564	400 (40.0%)	400 (50.0%)	250 (50.0%)	100 (50.0%)
\$44,564	300 (30.0%)	300 (37.5%)	250 (50.0%)	100 (50.0%)
\$47,564	200 (20.0%)	200 (25.0%)	200 (40.0%)	100 (50.0%)
\$50,564	100 (10.0%)	100 (12.5%)	100 (20.0%)	100 (50.0%)
\$53,564	0 -	0 -	0 -	0 -

주: ()안은 본인부담 대비 보조금액의 비율임

자료: ATO(<https://www.ato.gov.au/Individuals/Super/In-detail/Growing-your-super/Super-co-contribution/?anchor=Makingpersonalcontributions#Makingpersonalcontributions>)

- 이처럼 호주는 세액환급금과 매칭보조금 제도와 같이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과 함께 보조금도 제공하고 있으며, 이에 더하여 동 지원금이 노후자산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모두 연금계좌로 환급되도록 하는 특징을 보임
- 우리나라도 현행 세액공제액을 계좌환급하여 노후자산을 축적하고,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입유인을 제고하는 정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
 - 현행 세액공제 수준을 높여 가입유인을 제고하고, 이로 인해 발생한 세액공제액은 연금자산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세액환급금 제도와 같이 연금계좌에 환급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 - 특히, 일정소득(예, 5천 500만 원) 이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본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일정 비율만큼 보조금을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가입유인을 제고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
 - 연금세제 개편에 따른 추가 재원 마련 방법 중 하나로, 현행 퇴직일시금에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를¹⁷⁾ 낮추어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 세금액을 그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**kiri**

17) 양인준·전병욱·강성모(2014), 「연금제도에 대한 유기적 과세체계 정립방안 연구」, 한국재정학회; 강성호·류건식(2017), 「퇴직소득세 개선과 연금화 방안」, 『고령화리뷰』, 제13호 등에서 제기